

“ 자원순환형 사회를 선도하는 ”



## 한국건설자원협회

수신자 각 지회장 및 대표이사

(경유)

참 조 용역이행실적신고담당자

제 목 '21년도 용역이행능력평가·공시를 위한 실적신고 안내

1. 우리 협회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21년도 용역이행능력평가·공시를 위한 용역이행실적을 오는 '21.1.4(월)부터 접수 할 예정이오니 불임의 신고방법을 참고하시어 기한 내 ('21.2.15)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21.1.1일부터 발주되는 용역의 경우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제2019-179호, 2019.10.8) [별표]제5호나목의 규정에 따라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실적('18년~'20년)에 대해 평가토록 하고 있는 바, 긴급하게 '20년도 실적 확인이 필요한 업체에서는 신고가 완료되는 시점 전이라도 해당 실적을 우선 협회에 제출하여 확인 받으시기 바랍니다.

3. '20년도 용역이행실적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을 경우 평가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18년, '19년도 실적만('20년도 실적은 0원으로 기재) 발급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불임 : '21년도 용역이행능력평가·공시를 위한 실적신고 안내 1부. 끝.

한국건설자원협회 회장



전결

담당 신현하 대리 이은선 부장 김선영 본부장 이원표 사무총장 안연광

협조자

시행 운영관리 - 619 호 (2020.12.21) 접수

우 06752 서울 서초구 바우피로27길 2, 일동제약빌딩 3층 / www.koras.org

전화 02-3476-7787 전송 02-3476-8464 / koras@koras.org / 공개

[붙임]

## '21년도 용역이행능력평가공시를 위한 실적신고 안내

### □ 실적신고 일정 및 방법

- 신고기한 : '21.1.4(월) ~ 2.15(월) 18:00까지
  - ※ 재무제표 : '21.4.15(목)까지(개인 6.10(목)까지)
- 신고방법 : 협회 통합전산시스템(<http://siljuk.koras.org>) 로그인
  - 용역이행능력평가지스템 상 실적자료 전산 신고
  - 전산 신고자료 출력 및 방문 제출(관련 증빙자료 첨부)
  - ※ 실적신고는 '용역이행능력평가지스템' 상 전산 신고 및 서류 제출이 모두 이루어져야 완료됨

### □서류 제출 및 비용 납부

- 제출방법 : 방문 제출(정본 1부 제출, 부분 1부 보관)
- 제출처 : 협회 중앙회(회원사의 경우 각 지회로 신고 가능)
- 정보관리비용 납부 : 550,000원(부가세포함)
  - 입금계좌 : 우리은행 1005-982-007787 (예금주 : 한국건설자원협회)
  - ※ 신고서류 방문 제출 전까지 비용은 완납해야하며, 반드시 회사명으로 입금하여야 함
- 기타
  - 전자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하여 전년도 사업자등록증상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변경된 사업자등록증 팩스(02-3476-8464) 송부 요망

### □참고사항

- '신고서류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등 관련 세부사항은 협회 홈페이지([www.koras.org](http://www.koras.org))-자료마당-기타자료실-실무교육자료(No.125) 참조
- '20년도 실적 확인이 필요한 업체에서는 해당 실적에 대해 우선 제출 필요
- 문의 : 평가팀(02-3476-7787)